신한은행 퇴직연금 정기예금 특약

제1조 약관의 적용

신한은행 퇴직연금 정기예금(이하 '이 예금'이라 함)의 거래는 이 특약 외 예금거래기본약관 및 거치식예금약관을 적용합니다.

제2조 예금과목

이 예금은 정기예금으로 합니다.

제3조 가입대상

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한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로 합니다.

제4조 계약기간

- ① 이 예금은 일반 퇴직연금 정기예금 또는 디폴트옵션 퇴직연금 정기예금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.
- ② 일반 퇴직연금 정기예금의 계약기간은 1개월에서 60개월(5년) 이내에서 연, 월, 일로 합니다.
- ③ 디폴트옵션 퇴직연금 정기예금의 계약기간은 36개월에서 60개월(5년) 이내에서 연, 월, 일로합니다.

제5조 최저가입금액

이 예금의 최저가입금액은 1원 이상으로 합니다.

제6조 재예치

- ① 확정급여형 퇴직연금(DB)
 - 1. 이 예금은 예금주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만기일에 자동으로 재예치 되며, 약정이자율을 제외한 계약조건은 직전 계약조건과 동일하게 재예치 됩니다.
 - 2. 자동으로 재예치 되는 원금은 직전 계약기간의 원금에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합니다.
- ② 확정기여형 퇴직연금(DC) 및 개인형(기업형) 퇴직연금(IRP)
 - 1. 이 예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1조의3에 의해 만기일에 해지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상환됩니다. (다만,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선정하지 않는 등 불가피한 경우 2023년 7월 11일까지 재예치 됩니다.)
 - 2. 디폴트옵션 퇴직연금 정기예금 중 사전지정운용방법에 펀드 상품과 함께 포트폴리오의

형태로 이 예금이 편입된 경우 예금주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만기일에 자동으로 재예치되며, 약정이자율을 제외한 계약조건은 직전 계약조건과 동일하게 재예치 됩니다.

3. 자동으로 재예치 되는 원금은 직전 계약기간의 원금에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합니다.

제7조 이자

- ① 이 예금은 예금일 및 매 재예치일을 이자율결정일로 합니다. 단, 재예치일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달의 말일을 재예치일로 합니다.
- ② 이 예금의 이자율은 매 이자율결정일에 영업점에 고시된 계약기간별 이자율에 따라 변경적용합니다.
- ③ 이 예금의 이자는 만기일에 셈하여 원금과 함께 지급합니다.

제8조 중도해지이자율

- ① 예금주가 만기일(재예치일)전에 지급 청구할 때는 신규일(재예치일)로부터 지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신규일(재예치일) 당시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고시된 중도해지이자율에 의해 지급합니다. 단, 2025년 06월 30일 이후 신규된 디폴트옵션 퇴직연금 정기예금에 대해서는 아래의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됩니다.
 - 가입기간 33개월 미만: 신규 또는 재예치 당시 고시된 약정이자율*80%
 - 가입이간 33개월 이상: 신규 또는 재예치 당시 고시된 약정이자율*90%
-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제도에서 인정하는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에 의해 만기일 전 예금주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청구할 때에는 예금일 또는 재예치일로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금일 또는 재예치일에 영업점에 고시된 이 예금의 특별중도해지이자율로 셈하여 지급합니다.
 - 1. 가입자의 퇴직, 연금형태의 지급 사유
 - 2.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18조 2항에서 중도인출 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
 - 3. 퇴직연금의 계약해지 사유
 - 1)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합병, 영업양도로 인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
 - 2)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파산 또는 폐업
 - 3) 관련법령의 변경으로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
 - 4) 수탁자의 사임
 - 5) 가입자의 사망

- 4. 퇴직연금계약에 의한 일정률의 수수료지급 사유
 - 1)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에 의한 운용관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할 경우
 - 2) 퇴직연금 자산관리계약에 의한 자산관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할 경우
- 5. 신한은행을 수탁자로 하는 퇴직연금 자산관리 계약이전 사유
- 6.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3조의4 및 제13조의6에 따른 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·승인취소등의 사유로 인한 상품 교체의 경우

※ 특별중도해지이자율

- 계약기간 12개월 이하: 신규 또는 재예치일 당시 고시된 계약기간별 약정이자율
- 계약기간 24개월 이하: 신규 또는 재예치일 당시 고시된 12개월제 약정이자율
- 계약기간 36개월 이하:

신규 및 재예치 이후 24개월 미만 경과 시 신규일 또는 재예치일 당시 고시된 이 예금의 12개월제 약정이자율

신규 및 재예치 이후 24개월 이상 경과 시 신규일 또는 재예치일 당시 고시된 이 예금의 24개월제 약정이자율

- 계약기간 60개월 이하:

신규 및 재예치 이후 24개월 미만 경과 시 신규일 또는 재예치일 당시 고시된 이 예금의 12개월제 약정이자율

신규 및 재예치 이후 24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경과 시 신규일 또는 재예치일 당시 고시된 이 예금의 24개월제 약정이자율

신규 및 재예치 이후 36개월 이상 경과 시 신규일 또는 재예치일 당시 고시된 이 예금의 36개월제 약정이자율

- ※ 단, 4호의 『퇴직연금계약에 의한 일정률의 수수료지급 사유』및 제6호 『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·승인취소등의 사유로 인한 상품 교체의 경우』에 의한 중도해지의 경우 신규일 또는 재예치일에 적용된 약정이자율로 셈하여 지급합니다.
- ※ 일단위 정기예금의 경우 계약기간 및 경과기간이 월 단위로 적용됩니다.

제9조 일부해지

- ① 이 예금은 만기해지 포함하여 3회 이내에서 일부해지가 가능합니다. 다만, 확정기여형 퇴직연금(DC)의 적립금 운용을 위하여 이 예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(DC)의 가입자별로 만기해지 포함하여 3회 이내에서 일부해지가 가능합니다.
- ② 전 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위한 예금 지급의 경우는 전 항의 일부해지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.

- 1. 확정급여형 퇴직연금(DB) 가입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경우
- 2. 퇴직급여를 연금형태로 지급하기 위한 경우
- 3. 퇴직연금 수수료를 지급하기 위한 경우
- ③ 만기일전에 일부해지하는 경우 일부해지금액에 대한 이자는 제8조에 따라 지급합니다.

제10조 거래제한

이 예금은 담보제공, 질권설정, 양도, 통장발급이 불가하며 비과세종합저축으로 할 수 없습니다.

제11조 예금자보호

- ① 확정급여형 퇴직연금(DB)
 -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.
- ② 확정기여형 퇴직연금(DC) 및 개인형(기업형) 퇴직연금(IRP)
 -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"5천만원까지"(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) 보호됩니다.

부칙

- 1. 이 특약은 2012.3.23부터 시행합니다.
- 2. 이 특약은 2012.9.18부터 개정 시행합니다.
- 3. 이 특약은 2012.9.21부터 개정 시행합니다.
- 4. 이 특약은 2013.2.22부터 개정 시행합니다.
- 5. 이 특약은 2013.11.1부터 개정 시행합니다.
- 6. 이 특약은 2014.9.16부터 개정 시행합니다.
- 7. 이 특약은 2015.1.1부터 개정 시행합니다.
- 8. 이 특약은 2015.2.9부터 개정 시행합니다.
- 9. 이 특약은 2015.6.8부터 개정 시행합니다.
- 10. 이 특약은 2020.12.27부터 개정 시행합니다.
- 11. 이 특약은 2022.11.01부터 개정 시행합니다.
- 12. 이 특약은 2025.06.30부터 개정 시행합니다.